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957
----------	-------

발의연월일 : 2026. 3. 31.

발 의 자 : 강경숙 · 김재원 · 신장식
박은정 · 서왕진 · 임호선
문정복 · 황운하 · 김선민
정춘생 · 김준형 의원
(11인)

제안이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교과용 도서의 검·인정 업무 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시행 등 국가 교육평가 전반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현재 평가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 소관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지도·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평가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교육정책의 연구 지원을 넘어, 교육과정 개발과 국가 차원의 교육평가를 직접 집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관리·운영 체계로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평가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제외하고, 교육부 소관의 법정 법인으로 하여 교육부와 직접적인 지휘·감독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교육과정 개발에서부터 교육평가 시행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지원, 교과용 도서의 검정·인정 업무 지원, 전국 단위의 학력평가지험의 출제·시행 및 채점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5조).
- 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둠(안 제6조 및 제8조).
- 라. 정부는 평가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2조).
- 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5조).
- 바.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17조).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설립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고 각종 학력평가를 실시함으
로써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
으로써 성립한다.

② 평가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4조(정관) ① 평가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직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평가원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 ① 평가원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지원 및 평가
2.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의 개발 및 검정·인정 업무의 지원
3.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업성취기준의 연구·개발
4. 학업성취도 평가도구의 개발 및 문제은행 체제의 구축
5. 각종 교육 및 심리검사 도구의 연구·개발
6.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학력평가지험의 출제·시행 및 채점
7. 교육과정 및 학력평가제도 발전방안의 연구 및 외국과의 비교
8. 교육과정 및 학력평가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자료의 발간과 이

에 따른 수익사업

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위탁받거나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평가원의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의 일부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임원) ① 평가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④ 원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 감사는 평가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제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가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8조(이사회) ① 평가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장은 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사회에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원장 등) ① 평가원에 원장 1명과 직원을 둔다.

② 원장은 평가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되,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직원의 임면)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원의 직원을 임면한다.

제11조(운영 재원)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설립·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교육과정 및 학력평가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자료의 발간 등에 따른 사용료·수수료 및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2조(출연금) ① 국가는 평가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평가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평가원에 국유·공유 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사업연도) 평가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① 평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평가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결산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인력의 파견요청) ① 평가원은 그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의 향

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원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시정요구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평가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평가원의 업무 또는 회계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시정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엄수의 의무) 평가원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제5조제2항에 따라 원장의 위탁을 받아 평가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수행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평가원이 아닌 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민법」의 준용) 평가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평가원의 임직원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원장의 위탁을 받아 평가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2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위원회)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전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구평가원”이라 한다)의 해산과 평가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설립준비위원으로 구성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설립준비위원회는 평가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평가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준비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구평가원은 이 법에 따른 평가원의 설립과 동시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중 연구기관의 해산 등에 관한 규정과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조(이사장 등의 임명에 관한 특례) 이 법에 따른 최초의 이사장, 이사(원장은 제외한다) 및 감사는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제5조(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른 평가원 설립 당시의 원장은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평가원 원장으로 하되, 그 임기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구평가원의 직원은 평가원이 설립된 때에 그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7조(설립 당시의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평가원은 설립 당시 평가원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구평가원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평가원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8조(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구평가원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평가원의 설립과 동시에 평가원이 포괄하여 승계한다.

②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구평가원의 명칭은 평가원의 명칭으로 본다.

③ 평가원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원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기관명란 중 제7호를 삭제한다.

②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8호 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에 따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임직원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구평가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평가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